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50
----------	------

발의연월일 : 2017. 4. 14.

발의자 : 조응천 · 이춘석 · 정성호

박주민 · 위성곤 · 김병기

김성수 · 김병욱 · 이철희

김영호 · 백혜련 · 김종민

기동민 · 김영진 · 강훈식

어기구 · 이 훈 · 송기현

노웅래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신체검사 등 신입자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 문제는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 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강진단”을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검사 및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입자 수용절차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 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같은 법 제200조의6, 제213조의2 및 제86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입자 수용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생략)</p> <p>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u>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u></p> <p>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u>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u></p> <p><u><신 설></u></p>	<p>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u></p> <p>③ ----- -----<u>검사 및 건강진단-----.</u></p> <p>제16조의2(신입자 수용절차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p> <p>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같은 법 제200조의6, 제213조의2 및 제86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유치된</p>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

치된 피의자